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

- 외사경찰 활동을 중심으로 -

Response to Foreigner Crime for Community Safety

- Focused on the Foreign Affairs Police Activities -

Min Sang Cho**

Department of Law·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e, Baek Seok University, Cheonan, Chungnam, Korea

Abstract

Crime by foreigners has been a persistent concern which not only alarms people in Korea but also threatens the safety of community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have an integrative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issue of foreigner crime, rather than to understand it as a specific task of specific organizations such as the police. Although the police carry out various activities to address foreigner crime, the criticisms against their activity include the lack of consideration of spatial clustering of foreigner residences and the lack of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e activities as a way to ensure the community safety from foreigner crime. One of the noticeable problem of foreigner crime in Korea is that foreigner crimes have been growing rapidly demonstrating a unique pattern by nationality and region, and tend to be more organized. However, the police department handling foreigner crimes faces the shortage of independent capability and trained personnel, unequal distribution of workload, and the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suggestions include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enforcement of foreigner crime, managing and renovating the areas of many foreigners, scaling up the sector in charge of foreigner crime, installing a hotline for foreign crime, and developing an integrative system handling foreign crimes effectively. organization in charge of foreigners criminal. Fourth, Foreigners crime related hotline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the integ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foreign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Tel. +82-41-550-9157. E-mail. police01@b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l. 17, 2015 / Revised: Aug. 9, 2015 / Accepted: Aug. 13, 2015

crimes.

Key words: foreign crimes, police, prosecution, cooperation, integration system

국문초록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전 국민에게 충격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는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특정 업무 영역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지역사회 또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 등 경찰활동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에서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외국인 범죄와 관련되는 현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는 국적별·지방청별로 발생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은 독자적인 업무 처리 및 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별 업무 가중 문제, 교육·훈련의 부족 문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의 강화이다. 둘째, 외국인 밀집 지역의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범죄 담당 부서의 거점화이다. 넷째, 외국인 범죄 관련 핫라인이 구축되어야 한다. 끝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외국인 범죄, 경찰, 검찰, 협력, 통합시스템

1. 서론

한국은 1990년대부터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문화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현상과 외국인 범죄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외국인 범죄가 다문화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의 보도를 접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불안 요소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인식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파생시킴과 동시에, 외국인의 증가에 대해 치안의 불안감을 갖게 하는 그릇된 인식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 요인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외국인 범죄,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현상, 외국인 혐오 현상(Xenophobia)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는 외국인 유입을 통한 경제적인 이윤창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광객의 유입이 증

가되고 있다(Yoo, 2010). 특히 중국의 관광객이 2012년에 비해 약 119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출·입국자 증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외사 치안수요의 증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 306).

경찰의 경우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다문화 사회와 관련하여 외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이들을 위해 가깝게 위치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언어권에 해당하는 외사요원을 특채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와 지역사회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등 경찰의 활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즉, 경찰에서 인식하고 대응하는 부분과 타 기관에서의 인식이 차이를 나타내면서 자국민 보호·외국인 보호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처리 부분에서 협력적인 활동을 통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외국인 범죄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치안 불안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대안은 오히려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과 양상을 따라가는 것에 신속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경찰에서의 사법 활동을 토대로 단속 및 검거 위주의 활동은 모든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범죄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들을 검거하여 사법 처리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예방적인 측면보다는 진압적인 측면에서의 활동이 되기 쉽다. 따라서 예방활동과 사후적 대응 활동에 대하여 경찰과 관련 기관의 공동 협력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 및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과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에서의 지역사회 안전은 범죄 분야에서의 안전으로 한정하고 외국인인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체류가 허용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여 논의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범죄 현황 및 경찰의 대응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조 1항). 외국인 범죄란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하여지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지만 형법 제 5조에서 정한 내란·외환죄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도 포함된다. 즉, 외국인 범죄는 범죄의 기본성격과는 달리 통상 외사범죄수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범죄와 내국인의 외국관련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국제성 범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사범죄수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만을 외국인 범죄로 한정해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는 크게 1)입국과 관련된 범죄, 2)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에 일으킨 범죄, 3)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Choi & Choi, 1994: 84-111). 첫째, ‘입국과 관련된 범죄’는 불법체류나 밀입국 같은 단순 범죄와 불법체류 등을 위한 여권위조 등의 범죄가 해당된다. 최근에는 여권의 위·변조나 사증의 위조와 같은 각종 서류의 위조 및 부정 취득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에 일으킨 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등의 일반적인 범죄를 의미한다. 합법적으로든지 불법적으로든지 일단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생활하는 중에 형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를 범할 경우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는 입국 당시부터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있는데 이들이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조직범죄적인 성격을 띠며, 이 중에서 일부 범죄는 국내의 범죄조직과 외국의 범죄조직이 연계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규모의 범죄 특성을 갖기도 한다. 해당 범죄 특징에 따라 불법취업 브로커 조직이 주류를 이루는 전문적·직업적 범죄집단에 의한 범죄, 마약밀수, 보석밀수, 매춘 등이 있다(Lee, 2002: 84).

2. 외사경찰의 개념

1) 외사경찰의 의의

외사경찰이란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인, 외국사절, 외국기관, 외국상사단체, 외국인이나 외국과 관련된 내국인, 그리고 해외여행자, 해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정보의 수집, 범죄수사, 방첩활동 및 국제협력을 주요임무로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Kim, 2009: 559).

즉,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과 관련된 내국인 등의 외사대상에 대하여 이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단속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한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단체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물론 내국인 또는 해외교포가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내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저지른 범죄, 그리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 및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외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모두 외사경찰의 영역이다(Cho, 2003: 562).

2) 외사경찰의 업무

외사경찰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기관·단체 또는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내국인이 관련된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주업무로 하는 일반경찰활동과 구별되며, 국내 치안질서 유지와 반국가적 행위의 예방단속에 관해서도 그 대상이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라는 점에서 일반 정보·보안활동과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대상 법률위반 사항도 일반 형법위반사건 보다는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외환관리법, 외국인등록법, 밀항단속법,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주로 외국인과 관련 있는 범법행위와 내국인의 외국관련 범죄를 주 단속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외사경찰은 외교사절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외교사절은 일반 체류 외국인과는 달리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으므로 업무 취급상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2004: 19-21).

3) 외사경찰 활동의 중요성

외사경찰은 외사정보와 외사보안활동 뿐만 아니라 외사범죄의 수사, 국제협력 활동 등의 광범위한 업무를 범주로 하고 있다. 외사정보 활동은 외국인, 해외동포, 주한 외국기관, 외국인과 관계있는 내국인, 국내·외 출입국가 등을 대상으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 대한 일반 첩보와 외국인에 의한 반국가활동, 출입국관련 범죄, 국제성 범죄 등에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고 작성·배포하는 활동을 말한다. 외사범죄 수사 활동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 및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활동을 말하며, 외사사범은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국제성 범죄와 일반외사사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Jo, 2012: 134-135).

더욱이 세계화 및 국가 간의 교류 확대, 해외 여행객, 방문 관광객 및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경찰활동에서 외국인과 관련되는 치안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외사경찰 활동의 대상과 범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더욱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외국인 범죄 및 외사경찰 현황

1. 외국인 범죄 현황

1) 외국인 인구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전수조사를 한 결과이다. 다음 <Table 1>은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로써, 이를 토대로 국적별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Foreign status by nationality (2009–2013)

(Unit: Person)

Item	2009	2010	2011	2012	2013.07
Total	870,636	918,917	982,461	932,983	960,681
China	488,651	505,415	536,699	474,806	482,066
(Korean-Chinese)	363,087	366,154	389,398	322,861	325,689
USA	31,379	28,463	26,466	23,440	22,922
Vietnam	86,166	98,225	110,564	114,211	114,018
Japan	18,594	19,448	21,126	22,648	23,331
Philippines	38,423	39,525	38,366	33,194	36,905
Thailand	28,695	27,572	25,977	21,423	24,837
Indonesia	25,937	27,447	29,573	29,812	30,577
Uzbekistan	15,868	20,766	24,380	28,022	29,875
Mongolia	21,016	21,775	21,278	19,779	19,259
Taiwan	21,698	21,490	21,381	21,176	21,007
Canada	7,623	7,301	6,572	6,272	6,028
Sri Lanka	14,432	17,369	20,483	21,002	21,358
Cambodia	8,807	11,672	16,784	23,351	28,132
Bangladesh	7,255	9,317	10,561	10,776	10,662
Nepal	7,371	9,208	12,603	17,824	19,950
Russia	5,841	6,088	5,998	5,249	5,087
Pakistan	7,883	8,328	8,215	7,876	7,978
India	4,131	4,752	5,363	5,959	6,253
Myanmar	3,587	3,809	5,606	8,272	9,983
UK	3,828	4,130	4,748	4,956	5,315
France	1,843	2,009	2,126	2,342	2,363
Etc	21,608	24,808	27,592	30,603	32,775

※ Source: Affairs planning department, National Assembly submissions(2014).

집계된 전체 외국인은 2013년 현재 96만 명을 넘고 있다. 이는 2009년을 기점으로 약 9만 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체 중에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이 807,755명으로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은 베트남 114,018명, 필리핀 36,905명 순으로 파악되었다.

2)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

다음 <Table 2>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 대비 검거율 현황이다. 각 국적별로 체류외국인 10,000명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인구 1만 명당 범죄 검거 건수 상위 10개 국가를 선별한 결과이다.

<Table 2> Crime present condition about Residing foreigners population(2012)

(Unit: Person)

No.	Nationality	Foreign residents	Suspect Arrest	Number of arrested suspects per ten thousand Foreign residents
1	China	698,444	13,646	195
2	vietnam	120,254	2,059	171
3	USA	130,562	1,832	140
4	Mongolia	26,461	1,485	561
5	Uzbekistan	34,688	778	224
6	Taiwan	30,413	439	144
7	Sri Lanka	22,354	392	175
8	Canada	23,051	338	147
9	Russia	11,361	250	220
10	Pakistan	10,027	227	226

※ Source: Immigration Policy Division statistics(2014).

체류 외국인 1만 명당 피의자 검거 수는 몽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몽골 피의자 중에서 약 75%는 단순 폭행·절도 및 교통사범 등으로 생활형 범죄자로 분석되었다. 중국 국적 외국인의 경우 1만 명당 피의자 검거 수는 195명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피의자 검거건 수는 13,64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 국적 외국인에 대한 집중적인 경찰활동의 전개가 더욱 필요하며 국적을 고려한 개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유형별 외국인 범죄 현황

다음 <Table 3>은 범죄 유형별로 나타난 외국인 범죄 현황이다. 구속과 불구속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분석결과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기타 범죄를 제외하고, 26,663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폭력범죄가 8,72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계된 시점인 2009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통사범의 경우도 5,965명이 발생되었으며 2009년 435명인데 비해 급증하였다. 지능범은 3,353명이 검거되었으며 그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503명이 검거되었으며 2009년 198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별 현황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범죄에 대해 외사경찰의 활동이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관련 부서의 협력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여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Table 3> Foreigner crime status by type(2009-2014.6)

(Unit: Person)

Year	Total	Murder	Robbery	Rape	Burglary	Violent crime	Drug	Intellectual offenses	Gambling	Traffic illegal act	Others	Detention	Measure Without detention
'09	23,344	103	260	198	2,001	5,322	778	4,792	1,776	435	7,679	1,446	21,898
'10	22,543	83	221	255	1,741	5,885	720	4,487	1,220	985	6,946	892	21,651
'11	26,915	103	157	308	1,766	7,830	243	3,549	2,936	1,294	8,729	984	25,931
'12	24,379	87	188	355	1,682	8,408	233	3,187	1,000	4,807	4,432	807	23,572
'13	26,663	77	139	503	1,905	8,722	223	3,353	809	5,965	4,967	870	25,793
Jun.14	14,056	37	50	226	885	4,242	153	1,989	377	3,235	2,862	450	13,606

※ Source: Foreign Investigation Affairs, National Assembly submissions(2014).

4) 지방청별 외국인 범죄 현황

다음 <Table 4>는 전국의 지방경찰청별 외국인 범죄 현황이다. 지방청별로 외국인 범죄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이를 토대로 외국인 담당 부서별 인력 배치와 중점적인 경찰활동의 지점을 선정하는 것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집계가 된 201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지방청이 8,68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서울지방청 8,144명, 경남지방청 1,444명, 인천지방청 1,244명, 부산지방청 1,045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밀집되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담당 경찰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Table 4> Foreigner crime status by local police agency(2009-2014.6)

(Unit: Person)

Year	Total	National Police Agency	Seoul	Busan	Daejeon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Gyeonggi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am	Gyeongbuk	Gyeongnam	Jeju
2009	23,344	114	7,739	1,178	865	1,253	198	294	393	7,937	266	303	411	223	379	650	1,051	90
2010	22,543	26	6,995	1,108	635	1,112	243	325	416	7,116	314	546	625	364	436	791	1,378	113
2011	26,915	5	9,688	1,007	637	1,305	202	230	431	8,504	306	507	763	375	461	682	1,691	121
2012	24,379	6	7,881	916	722	1,194	319	215	491	7,766	341	577	856	416	430	735	1,350	164
2013	26,663	7	8,144	1,045	804	1,244	352	233	672	8,689	345	624	934	465	465	897	1,444	299
Jun. 2014	14,056	7	4,225	515	419	784	165	135	409	4,580	158	389	526	243	218	389	753	141

※ Source: Foreign-Investigation Affairs, National Assembly submissions(2014).

5) 외국인 폭력배 현황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서울구로·영등포·이태원·경기도 안산)을 중심으로 도박, 마약 등과 관련된 외국인 폭력배의 활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야쿠자·중국 흑사회 등 해외 범죄조직이 대부업·건설업·부동산 업 등 합법을 가장하여 국내에 진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외국인 집단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폭력조직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2013년 현재, 관리대상 외국인 폭력배는 경기 38명, 서울 35명, 인천 7명, 경남 5명, 충남 2명, 전남 1명으로 총 88명이다(경찰청 외사수사과 내부자료, 2014).

이들이 주로 보이는 범죄경향은 자국내 동일지역 출신끼리 결집하여 자국 민 운영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자금을 대부분 후 채권추심 목적으로 폭행·갈취하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보복우려 및 신분상 약점으로 인해 피해신고를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 310).

2. 외사경찰 현황

1) 외사경찰 인력 현황

외국인 범죄의 지능화·조직화 등 외사 치안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사수사의 전문성과 수사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6년 3월에 경찰청 외사관리관을 외사국으로 승격하여 외사국장을 치안감으로 격상하고 3과 8개로 확대, 개편하여 외사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에는 외사국 산하에 외사기획과, 외사정보과, 외사수사과를 운영하고 있다. 외사기획과에는 외사기획, 국제협력, 국제보안의 업무를, 외사정보과는 외사정보1·외사정보2의 업무를, 외사수사과는 외사수사, 인터폴, 국제범죄수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지방청 단위에서는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로 나누어 운영하던 중, 외국인 관련 치안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서 외사수사 인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지방청 외사기획, 외사정보기능을 통합하고, 국제범죄수사대를 창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 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방청 외사 경찰의 인력은 현재 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본청과 지방청의 합계를 보면, 2009년은 1,120명 정원이며, 2013년은 1,095명이다. 물론 경찰의 인력만으로 그 활동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의 추세를 고려할 때, 변화하는 치안환경을 대비하는 조직의 구성과 인력의 배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국 주요 지방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제범죄

유형별로 팀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살인 등 강력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강력팀을 비롯해 기업의 각종 정보를 빼돌려 해외로 유출시키는 범죄를 다루는 산업기밀유출수사팀, 금융관련 범죄를 취급하는 금융범죄수사팀, 외국경찰과 함께 수사를 벌이는 인터폴팀 등이 있다(<http://www.fnnews.com/news/201403261812225376>).

<Table 5> Foreign Affairs Police Employees status of local police agency(2009-2013.7)

(Unit: Person)

Division	Year	'09		'10		'11		'12		Jul. '13	
		Quota	Actual	Quota	Actual	Quota	Actual	Quota	Actual	Quota	Actual
Total		1,120	1,140	1,126	1,135	1,119	1,111	1,102	1,078	1,095	1,068
National Agency		84	81	79	83	69	72	68	68	65	68
Local Agencies total		1,036	1,059	1,047	1,052	1,050	1,039	1,034	1,010	1,030	1,000
Seoul		267	274	275	273	278	266	277	267	274	261
Busan		119	119	117	120	116	115	116	111	116	113
Daegu		66	61	66	67	65	65	65	64	66	66
Incheon		130	134	132	128	129	125	105	101	105	100
Gwangju		15	18	15	15	15	14	15	16	15	16
Daejeon		22	21	21	20	21	21	21	21	20	21
Ulsan		17	17	17	16	17	17	17	19	18	16
Gyeonggi		146	154	151	155	153	155	164	156	163	154
Gangwon		26	25	26	25	26	25	26	25	26	24
Chungbuk		30	29	28	27	31	31	31	30	31	31
Chungnam		30	33	30	32	32	34	32	34	32	34
Jeonbuk		32	32	32	32	31	32	31	29	31	31
Jeonnam		21	23	21	22	21	23	21	23	21	24
Gyeongbuk		34	34	33	33	33	32	32	34	32	32
Gyeongnam		46	51	49	52	48	50	48	49	47	47
Jeju		35	34	34	35	34	34	33	31	33	30

※ Source: Affairs planning department, National Assembly submissions(2014).

2) 외국인 거주자 외사담당 경찰관 현황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은 지역별 거주를 고려하여 운영될 필요가 분명하다. 즉, 확실적인 인력 배치는 경찰력의 운영에 있어서 낭비를 초래함과 동시에 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방청별 외국인 거주자와 외사담당 경찰관의 현황이다.

외사경찰관의 정원과 등록 외국인 수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외사경찰 1인당 담당해야하는 등록 외국인 수는 932.7명이다. 이는 외사경찰의 업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 또한 지역별 외사경찰 인원의 배치를 분석하면, 경기청의 경우 외사경찰관 1인당 1,856명이며 서울청의 경우 1인당 893.4명, 제주청의 경우 1인당 300.6명으로 분석된다. 전체 등록외국인이 범죄자인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의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도 외사경찰관들이 담당해야하므로 인력 배치에서 일정 수준의 비율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6> Foreign residents · foreign affairs police officer status(2013)

(Unit: Person)

Local Agency	Division	Number	Local Agency	Division	Number
Seoul	Registered foreigner	244,812	Gangwon	Registered foreigner	13,475
	Foreign affairs officer	274		Foreign affairs officer	26
Busan	Registered foreigner	35,272	chungbuk	Registered foreigner	26,376
	Foreign affairs officer	116		Foreign affairs officer	31
Daegu	Registered foreigner	22,407	Chungnam	Registered foreigner	50,844
	Foreign affairs officer	66		Foreign affairs officer	32
Incheon	Registered foreigner	48,800	Jeonbuk	Registered foreigner	22,809
	Foreign affairs officer	105		Foreign affairs officer	31
Gwangju	Registered foreigner	14,911	Jeonnam	Registered foreigner	24,167
	Foreign affairs officer	15		Foreign affairs officer	21
Daejeon	Registered foreigner	14,380	Gyeongbuk	Registered foreigner	41,789
	Foreign affairs officer	20		Foreign affairs officer	32
Ulsan	Registered foreigner	21,065	Gyeongnam	Registered foreigner	67,029
	Foreign affairs officer	18		Foreign affairs officer	47
Gyeonggi	Registered foreigner	302,623	Jeju	Registered foreigner	9,922
	Foreign affairs officer	163		Foreign affairs officer	33

※ The total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s : 960,681, / Total foreign affairs officer : 1,030

※ Source: Affairs planning department, National Assembly submissions(2014).

3. 외사경찰 교육훈련 현황

지능화·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성 범죄와 급증하는 외사 치안 수요에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외사 치안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수사 기법과 외국에 등 다양한 전문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교육원에서는 외사첩보 습득에 관한 지식 및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수사기법 등 외사요원의 기본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외사요원 양성과정’과 ‘외사정보 전문화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 325).

또한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국제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제범죄 수사과정’을 개설하였다.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사이버 외국어학센터를 개설하여 영어·중국어·일본어·불어·러시아어·스페인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몽골어·아랍어 등에 대한 어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http://police2015.winglish.com>).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치안환경을 고려할 때, 외사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교육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 외사요원 및 외사 분야 근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과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간은 15과목 35시간으로 동일하다. 10개의 직무과목을 27시간에 모두 습득하는 것은 사실상 내실 있는 교육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과목의 개설과 직무상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외사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일반 경찰교육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7> Training course in Police Training Institute

Sortation subject	Training Course for Foreign Affairs officers		Specialized Course for Foreign Affairs Intelligence		
	below Inspector		below Inspector		
period	35hours(1 week) – 7 hours / day		35hours(1 week) – 7 / day		
entering requirement	Newly appointed foreign affairs officers in local police agency or police station		Present officers in foreign affairs division (Newly appointed priority)		
Education Dir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rection of foreigner crime and foreign affairs by understanding of Multiple cultural society ○Learning Foreign affair practice in all areas(planning · intelligence · investigation) ○Basic ability training in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estigation ○Knowledg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raise through case study based discuss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Foreign affairs about public security intelligence, such as Management of multiple culture members(foreign residents) crime, etc. ○Develop the basic competency in foreign intelligence combined directly with practice ○Training focus on intelligence report writing and an ability of application through practice ○Knowledg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raise through case study based discuss learning 		
subject	field	subject	hour	subject	hour
	cultural studies	1.Public service ethics (integrity and prevent corruption)	5	1.Public service ethics (integrity and prevent corruption)	5
		2.special lecture(policy education as security, etc)		2.special lecture(policy education as security, etc)	
	Job subject	1. Foreign affairs activity through a understanding of multiple cultural society	27	1. Foreign intelligence affairs through a understanding of multiple cultural society	27
2. Necessary international manners in exchange and cooperation (ceremony and etiquette)		2. Study on case of foreign intelligence application			
Etc	3. Study on case of foreign intelligence application	27	3. Practice on foreign intelligence report(item discover)	27	
	4. Practice on foreign intelligence report(report writing and discussing)		4. Practice on foreign intelligence report(report writing and discussing)		
Total	5. Ati-terrorism and airport security activity	3	5. Foreign intelligence gathering through SNS and internet	3	
	6. Foreign crime investigation techniques as a response to international crime		6. Know-how about crime intelligence gathering by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Total	7. SOFA cases handling and know-how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estigation	3	7. Ati-terrorism and airport security activity	3	
	8. Presentation of job		8. Presentation of job		
Total	9. experience knowledge	3	9. experience knowledge	3	
	10. Sports		10. Sports		
Total	1. Living culture	3	1. Living culture	3	
	2. Course introduction		2. Course introduction		
Total	3. Survey and completion	3	3. Survey and completion	3	
Total		15 subjects(35hours)		15 subjects(35hours)	

※ Source: Police Training Institute, 2014.

1. 외국인 범죄 단속활동 강화

국제화·개방화로 인해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 및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국제성 범죄와 함께 외국인 범죄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되어야 하지만, 외국인 범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체류 중인 자국민들 대상으로 범행이 시도되는 모습을 보인다. 더구나 최근 발생되고 있는 범죄의 양상은 국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변화되고 있다.

<Table 8> Foreign crime Arrest Status by Nationality(2014)

(Unit: Person)

	Total	China	USA	Japan	Russia	Philip pine	Thaila nd	Vietna m	Mong olia	Others
2012	22,914	13,152	1,668	171	270	270	576	1,819	1,381	3,607
2013	24,984	14,557	1,799	169	260	364	597	1,666	1,274	4,298
Variation (%)	▲9.03	▲10.68	▲7.85	▽1.17	▽3.70	▲34.81	▲3.65	▽8.41	▽7.75	▲19.16

※ Source: 2014 Police White Paper(2014: 310).

이에 경찰에서는 전국 10개 지방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외사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의 발생은 연중 시의성 있는 테마 단속으로 실시되고 있는 바, 외국인 과밀 지역을 특별 관리 전담할 수 있는 국제범죄수사대를 지정하여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위의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를 발생시키는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미국,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의 경우 언어를 비롯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개별적인 대응이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단속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점 단위의 역량이 준비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단속활동은 외사경찰의 집중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지방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외국인 밀집지역의 관리 개선

경찰청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관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체류외국인이 1,000명 이상 거주시에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선정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104개, 2008년 114개, 2009년 166개의 밀집지역이 선정되어 관리되었다. 이후 2009년 8월부터 기존 경찰서 단위 밀집지역 기준을 세분화하여 지구대 관

할 내 등록외국인 1천명 이상, 외국인 비율 5% 이상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최근에는 ‘외국인 중점관리구역’을 36개로 확대하여 지방청내의 관할 경찰서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다(경찰청, 2014).

경찰에서는 등록외국인의 수와 외국인 비율 5%로 선정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을 개편하여 관리를 강화하고는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인원이나 비율을 기준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의 외국인 활동 시설과 빈도를 고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즉,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이나 생계활동, 교육 정도와 특히 범죄 경력 유무를 파악하여 경찰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의 취업 및 거주자가 밀집한 지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파악하는 데는 경찰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부 기관 및 지자체, 지역 사회 내의 민간 기업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3. 외국인 범죄 담당 부서의 거점화

경찰은 외국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첩보수집·분석·DB구축·추적검거까지 통합한 전문적인 수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는 조직화, 전문화, 광역화, 기동화,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등 내국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범죄유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응활동에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국인 범죄와는 다른 국제적 협력 및 국내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 전망은 폭력사범과 교통사범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력 사범 중에서 살인·강도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강간 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Police Science Institute, 2015: 90). 따라서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 교통, 강간 범죄에 대한 대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9> Foreign crime Arrest Status by Crime Category(2014)

(Unit: Person)

	Total	Murder	Robbery	Rape	Burglary	Violent crime	Intellectual	Gambling	Traffic	Drug	other
2012	21,914	84	141	348	1,554	8,073	2,231	905	4,673	221	4,684
2013	24,984	73	104	499	1,743	8,338	2,299	699	5,769	200	5,260
Variation (%)	▲9.03	▽13.10	▽26.24	▲43.39	▲12.16	▲3.28	▲3.05	▽22.76	▲23.45	▽9.50	▲12.30

※ Source: 2014 Police White Paper(2014: 309).

이와 관련하여 조직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범죄 담당 조직의 조정이 필요하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지방청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제범죄수사대를 확대하여 거점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경찰서 단위에서의 통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신속하고 집중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대응하는 것에는 지방청 단위에서 거점을 두고 지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업무 부분에서는 일선 경찰서의 의사, 수사, 형사기능은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선경찰서에서도 국제범죄수사대와 같이 외국인 범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업무 충돌과 책임 전가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업무를 지방청 단위에서 역량을 집중해서 운영하고, 이에 대등한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구축된 거점을 통해 일선 경찰서 및 관할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4. 외국인 범죄 관련 핫라인 구축

지역사회에서 외국인과 우리 시민이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인은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일반 시민들은 외국인들이 실행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핫라인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외국인 범죄의 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전담 부서의 지정을 통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협력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범죄에 대한 대응만을 위한 전담부서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부서를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력적인 측면에서 전문 인력의 채용은 확대되어야 한다. 외국인 범죄와 민원의 치안 수요 증가로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어 전문요원을 채용하고 있다. 2013년에는 외국어와 외국문화에 능통한 14명의 귀화자를 특채하였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 325). 그러나 외국인들의 국적과 사용하는 언어권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채용 인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10> Foreign Language Specialist Status in police

(Unit: Person)

Tot al	Chi nes e	Viet na mese	Rus sia n	Ind one sia n	En glis h	Tha i	Jap ane se	Ara bic	Mo ngc lian	Fre nch	Sr an sh	Urd u	Tag alo g	Ba ngl a	Ger ma n	Bur me se	Sin hal a	Hin di	Ne pali	Kh mer	Uz bek	Per sian	
216	54	30	20	15	15	13	10	12	12	9	6	2	3	4	2	1	2	1	2	1	1	1	1

※ Source: 2014 Police White Paper(2014: 325).

경찰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채용을 크게 확대하기 곤란하다면, 현재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범죄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활동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 등 일반 경찰들이 구사 가능한 언어권은 교육을 통해서 충족시키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언어권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별적인 채용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5. 외국인 범죄 통합시스템 구축

경찰에서는 2009년 8월부터 ‘외사조정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현황 및 동향 파악과 관할지역 내 심층적 범죄정보 수집을 통한 범죄유려자 색출을 주 임무로 하는 것이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국내 외국인 관련 정세를 고려하면 외국인 범죄는 경찰의 독자적인 활동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하여 경찰을 비롯하여 유관 기관 및 지체체 등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범죄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초기 인지 부분은 경찰의 활동에만 전담시킬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조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타 기관과의 협력 창구가 필요하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서 1차적으로 지역사회 내의 외국인에 대한 파악과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출입국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법무부와의 협의하는 방안과 같이 협력적인 대응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즉, 지역사회로 전입하게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 경력을 포함하여, 출입국 사항 및 활동 상의 특이 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범죄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 및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 산하 기관, 출입국관리, 행정자치부 등 중앙 기관과 지방 정부 조직의 통합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의 경우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외국인 자살방범대 및 외국인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외사 환경 속에서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을 포함하는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전략적 측면을 통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경찰의 노력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주민의 협조가 없다면 정보수집 및 초기 인지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정보활동의 강화로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외국인 및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SNS를 활용한 상담 및 신고 시스템,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한 질의와 응답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범죄와 관련한 정보 수집과 원활한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안전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Oh, 2015: 108).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전 국민에게 충격일 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사회 주민에게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외국인 범죄는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특정 업무 영역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2006년부터 운영하던 「외국인 인권보호 센터」를 2009년에 「외사 범죄피해 신고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등 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외사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경찰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는 경찰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부족한 특성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외국인이라는 특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대상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외국인 범죄를 살펴보았다. 즉,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치안 불안 요소 중의 하나로 외국인 범죄를 연구 분야로 선택하여 어떤 방향에서 경찰의 활동이 중점적으로 전개 및 개선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였다. 외국인 실태 분석을 통해 국내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범죄는 국적별·지방청별로 발생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조직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자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던 범죄는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은 독자적 업무 처리 및 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별 업무 가중 문제, 교육·훈련의 부족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외사경찰과 관련된 활동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의 강화이다. 둘째, 외국인 밀집 지역의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범죄 담당 부서의 거점화이다. 넷째, 외국인 범죄 관련 핫라인이 구축되어야 한다. 끝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를 관리함에 있어서 생활안전을 비롯하여 정보경찰까지 내부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경찰 외부에서는, 관련 기관의 공동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언어와 관련되는 인력 부족 현상도 관련 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각 지자체 및 민간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을 통하여 외국인 도움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근 활동하고 있는 관광경찰대의 경우, 경찰의 활동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07804>). 기관과 담당 부서에서 비롯되는

업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활동의 분야와 대상에서 오는 공통점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본다.

본 연구는 자료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의 활동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찰의 대응을 비롯하여 타 기관들의 대응 활동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2004. Police Affairs.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 2014 Police White Paper.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Affairs planning department, National Assembly submissions.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 Foreign-Investigation Affairs, National Assembly submissions.
- Kim chung nam. 2009.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Seoul: Parkyoungsa.
- Oh youn sung. 2015. *Crime, talk about the psychology*. Seoul: Parkyoungsa.
- Yoo jung woo. 2010. Foreign medical tourists accommodated Condition and Strategies in Busan. Japanese Periodical Index.
- Lee yun geun. 2001. Theory of Comparative Police System. Seoul: Parkyoungsa.
- Cho chul ok. 2003. Police Administration. Seoul: Daeyoung co.
- Jo ho dae. 2012. Foreign Affairs Police function strengthening by globalization -Focusing on organization and manpower.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14(2): 131-148.
- Choi in sub & Choi young shin. 1994. Crime by Foreigners in Korea : Its Trends and Pattern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Police Science Institute. 2014. Peace prospects 2015.
- Police Training Institute. <http://www.pti.go.kr>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www.law.go.kr>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ttp://police2015.winglish.com>
- Policy News.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07804>
- The financial news. <http://www.fnnews.com/news/201403261812225376>

경찰대학. 2004. 경찰외사론. 경찰대학.
경찰청. 2014. 2014 경찰백서.
경찰청. 2010. 외사기획계 국회제출자료.
경찰청. 2014. 외사수사과 국회제출자료.
김충남. 2009. 경찰학개론. 서울: 박영사.
오윤성. 2015.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서울: 박영사.
유정우. 2010. 부산지역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용실태 및 대응전략.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연
구보고회 자료집.
이윤근. 2001.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조철욱. 2003. 경찰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조호대. 2012. 글로벌화에 따른 외사경찰 기능강화. 한국경찰학회보. 14(2): 131-148.
최인섭·최영신. 1994.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2014. 치안전망 2015.
경찰교육원. <http://www.pti.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사이버 어학센터. <http://police2015.winglish.com>
정책뉴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07804>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403261812225376>

조민상 : 순천향대학교에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경찰공무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직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현재 백석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찰 조직, 경찰인사, 경찰교육, 위기관리, 조직행동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미국경찰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경찰 전문화방안(2011)”,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무선연결망 구축방안(2012)”,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활용방안(2014)” 등이 있다(police01@bu.ac.kr).